

##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

2. 변경 사유:

-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

3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5년 03월 21일

4. 변경 주요 내용:

[신탁계약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<p>&lt;생략&gt; 1.~5.&lt;생략&gt; 6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%</u> 이하로 한다.</p>	<p>&lt;생략, 현행과 같음&gt; 1.~5.&lt;생략, 현행과 같음&gt; 6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40%</u> 이하로 한다.</p>
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	<p>8.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9.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	<p>8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(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9.&lt;생략, 현행과 같음&gt;</p> <p>10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